

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안내



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?

시·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제1종~제4종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조명기구별, 시간대별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말함



울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

지정목적 |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동·식물 위해 방지

시행시기 | 2023. 1. 1

지정위치 | 울산광역시 전역

구분	용도지역 등 이용현황	면적(km ²)
소계		1,071.07
제 1종	자연환경보전지역, 보전녹지지역, 보전관리지역, 농림지역(보전산지), 자연녹지지역(군립공원, 묘지공원, 야생생물보호구역, 생태경관보호지역)	379.68
제 2종	자연녹지지역(1종 제외), 생산녹지지역, 도시지역미지정, 계획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, 농림지역(1종 제외), 자연환경보전지역(등역온천원보호지구)	610.90
제 3종	전용주거지역, 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	67.37
제 4종	근린상업지역, 일반상업지역, 유통상업지역, 중심상업지역, 일반공업지역, 준공업지역	13.12

※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 지역 중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(미포, 온산)는 지정 제외

• 빛방사 허용기준

공간조명 가로등, 보안등, 공원조명 등

측정기준	구분	적용시간	기준값	조명환경관리구역				단위
				제1종	제2종	제3종	제4종	
주거지역직면조도		해진 후 60분 ~ 해뜨기 전 60분	최대값	10 이하			25 이하	klm/m ²

광고조명 옥외광고물 등

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

측정기준	구분	적용시간	기준값	조명환경관리구역				단위
				제1종	제2종	제3종	제4종	
주거지역직면조도		해진 후 60분 ~ 해뜨기 전 60분	최대값	10 이하			25 이하	klm/m ²
발광표면 휘도		해진 후 60분 ~ 24:00 ~ 해뜨기 전 60분	평균값	400 이하	800 이하	1,000 이하	1,500 이하	cd/m ²
				50 이하	400 이하	800 이하	1,000 이하	

② 그 밖의 조명기구

측정기준	구분	적용시간	기준값	조명환경관리구역				단위
				제1종	제2종	제3종	제4종	
발광표면 휘도		해진 후 60분 ~ 해뜨기 전 60분	평균값	50 이하	400 이하	800 이하	1,000 이하	cd/m ²

장식조명 경관조명 등

측정기준	구분	적용시간	기준값	조명환경관리구역				단위
				제1종	제2종	제3종	제4종	
발광표면 휘도		해진 후 60분 ~ 해뜨기 전 60분	평균값	5 이하	15 이하	25 이하		cd/m ²
				최대값	20 이하	60 이하	180 이하	

• 위반 시 행정처분

개선명령

명령대상	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*
조치기간	3개월 이내 (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 연장가능)
결과보고	3개월 이내 (증빙서류 첨부)
미이행시	조명시설의 전부(일부) 사용중지(제한)







* 조명기구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

과태료

2백만원 이하	관계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한 자
3백만원 이하	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1천만원 이하	조명시설의 사용중지·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
경과조치 |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전 설치조명 : 3년 유예 (2026. 1. 1.부터 적용)

• 대상조명

 공간조명			 광고조명			 장식조명		
								
가로등	보안등	공원등	[옥외광고물법]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			건축물, 숙박·위락시설, 교량, 문화재, 미술작품 ✓ 연면적 2,000㎡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✓ 숙박·위락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포함		

빛공해 간편측정 서비스 안내

• 빛공해 간편측정 서비스란?

- 디지털카메라로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기구 등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온라인 상으로 휘도 분석 서비스를 제공
- 본 서비스에서 분석되어 제공되는 자료는 빛공해 발생의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전문적이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는 자료의 활용이 불가하며, 빛 방사 허용기준의 초과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용도로만 이용

• 서비스 신청 방법

- 좋은 빛 정보센터 (<http://www.goodlight.or.kr>) 메인화면 하단에서 <서비스 안내>를 클릭하세요
- 간편 측정 서비스 안내 화면에서 <간편측정 매뉴얼>을 클릭 하시면 촬영방법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.

			
(O)	(O)	(X)	(X)
광고조명	장식조명	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	점멸광고, 동영상조명

※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의 경우 빛이 점멸하거나 움직이는 영상을 표출하는 경우 측정대상에서 제외

빛공해 검사기관 제도

- 환경부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인공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빛공해검사기관을 지정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• 검사기관 지정현황 ('22. 7월 기준)

 한국조명ICT연구원 ☎ 032-670-8888	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☎ 02.2092.3744	 아이라이트 ☎ 02-511-4835	 이즈소프트 ☎ 031-436-1422	 한국광기술원 ☎ 062-605-9114
---	--	---	---	---

※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'법령정보-분석기관지정'에 고시되어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환경대기과	052-229-7592	동구 환경위생과	052-209-3553
중구 환경위생과	052-290-3723	북구 환경위생과	052-241-7771
남구 환경관리과	052-226-5795	울주군 환경자원과	052-204-2129